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

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793 |
|----------|-----|

2024. 12. 11.(수)  
정책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종필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11월 28일

-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김종필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## 나. 주요내용

-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충청북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, 지정 취소,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~제10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### 가. 제출배경

-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장애의 유형도 다양화 되고 있는 가운데, 전체 등록장애인(2,641,896명)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율이 54.3%(1,425,095명)로 나타나, 지난 2020년 49.9%에 비해 증가하며 고령화 경향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.

또한,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84.8%이며, 평균 2.5개의 만성질환<sup>1)</sup>을 갖고 있어 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, 장애인과 비장애인 건강검진율도 격차<sup>2)</sup>를 보이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.

1)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(보건복지부, 24. 4. 30.)

: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 보유율 84.8%, 평균 2.5개의 만성질환 보유  
- 고혈압 49.3%, 이상지혈증 27.6%, 당뇨병 25.1%, 골관절염 23.3%, 만성통증 15.8%

2) ‘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, 비장애인보다 10%p 낮아’ (동아일보, 24. 9. 26.)

: 2023년 장애인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66.5%, 비장애인 수검률 76.4%

< 참고 1 >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

| 구 분            | 2011년도    | 2014년도    | 2017년도    | 2020년도    | 2023년도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등록장애인          | 2,519,241 | 2,494,460 | 2,545,637 | 2,623,201 | 2,641,896 |
| 65세 이상<br>장애인구 | 38.8%     | 43.3%     | 46.6%     | 49.9%     | 54.3%     |

자료 : 보건복지부 발표 (2024. 4. 30.)

< 참고 2 > 충청북도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수

| 장애유형별 | 장애인 수 (명) |
|-------|-----------|
| 지체    | 43,778    |
| 시각    | 8,702     |
| 청각    | 14,251    |
| 언어    | 713       |
| 지적    | 11,177    |
| 뇌병변   | 8,203     |
| 자폐성   | 1,155     |
| 정신    | 3,682     |
| 신장    | 3,519     |
| 심장    | 141       |
| 호흡기   | 333       |
| 간     | 520       |
| 안면    | 92        |
| 장루·요루 | 624       |
| 뇌전증   | 227       |
| 합계    | 97,117    |

자료 : 국가통계포털(KOSIS), 2023년 말 기준

- 이러한 상황에서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(약칭 : 장애인건강권법)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, 관련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추진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, 조례안을 통해 우리 지역의 정책적·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인에 대

한 의료서비스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건강 수준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임.

### < 참고 3 > 타 시도 ‘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’ 조례 제정 현황

| 연번 | 시·도 | 규정 및 지칭명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·개정일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경남  |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   | 2021. 8. 5.<br>(제정)    |
| 2  | 경기  |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    | 2023. 7. 18.<br>(일부개정) |
| 3  | 경북  |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   | 2023. 2. 23.<br>(제정)   |
| 4  | 충남  |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   | 2024. 4. 5.<br>(일부개정)  |
| 5  | 서울  |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  | 2019. 9. 26.<br>(일부개정) |
| 6  | 부산  |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  | 2018. 5. 23.<br>(제정)   |
| 7  | 대구  |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  | 2018. 12. 31.<br>(제정)  |
| 8  | 광주  | 광주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      | 2024. 8. 7.<br>(일부개정)  |
| 9  | 제주  |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| 2018. 3. 15.<br>(일부개정) |
| 10 | 강원  |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| 2023. 6. 9.<br>(일부개정)  |
| 11 | 전북  |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    | 2023. 12. 8.<br>(일부개정) |

#### 나. 주요내용 검토

##### ○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함. (안 제1조)

- 본 조례안은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, 안 제1조의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##### ○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. (안 제2조)

- 본 조례안의 정의 규정은 집행 과정상 명확성과 법 체계성을 위해 상위법상 용어의 정의와 일치시켰으며, 이를 통한 시책 추진상 혼선 방지 등의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보여짐.

○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. (안 제3조)

- 본 조항은 법 제4조에서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건강권 존중 및 보호, 실현과 관련한 책무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.  
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건강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▲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적극 시행, 적절한 진료 및 재활의료 제공, ▲장애인 개인별 소득과 교육수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건강 위협 상황의 예방 대책 수립·시행, ▲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대한 적극 홍보와 ▲인식개선 정책 실시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여 그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판단됨.

○ 도민의 의무를 규정함. (안 제4조)

- 본 조항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충청북도민의 의무로 명시함.  
이를 통해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관련 사업들이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○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수립·시행을 규정함. (안 제5조)

-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매년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, 충북을 포함한 6개 시·도는 시행(종합)계획 수립을 ‘매년’ 하도록 명시하였고, 경남을 포함한 5개 시·도는 ‘5년마다’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
| 매년                        | 5년마다                  | 시행계획 조항 없음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충북, 경북, 충남,<br>서울, 부산, 대구 | 경남, 경기, 광주,<br>제주, 전북 | 강원         |

- 시·도는 법 제6조<sup>3)</sup>에 따라 5년마다 ‘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’을 수립할 수 있지만,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매년 ‘국민 건강증진종합계획(제4조제2항제4의2 아동·여성·노인·장애인 등 건강 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)’을 수립해야 함으로 ‘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시행계획’을 매년 수립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

○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 및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6조)

-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과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함.

- 이는 법 제7조<sup>4)</sup>와 제8조<sup>5)</sup>, 제9조<sup>6)</sup>, 제13조<sup>7)</sup>와 제14조<sup>8)</sup>, 제15조<sup>9)</sup>, 제16조<sup>10)</sup>와 제17

- 3) 제6조(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고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
  2.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
  3.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·훈련에 관한 사항
  4. 장애 유형 및 정도,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
  5.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
  6.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4) 제7조(장애인 건강검진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(이하 “장애인 건강검진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다.
- 5) 제8조(장애인 건강관리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,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(이하 “장애인 건강관리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다.
- 6) 제9조(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진료, 재활 등을 위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,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, 「농어촌 등 보건 의료서비스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보건진료소,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(이하 “의료기관등”이라 한다)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, 모·부성권 보장,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

조11)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▲건강검진사업, ▲건강 관리사업, ▲의료접근성 보장 사업, ▲건강교육 사업, ▲장애인 건강권 교육 사업, ▲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, ▲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, ▲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각 사업들의 수행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.

○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, 지정 취소, 지도·감독 관련 사항을 규정 함. (안 제8조~제10조)

- 안 제8조에서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 하고,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9조와 안 10조는 안 제8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센터 지정 및 사업수행 과정 등에서 부정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센터의 지정 취소 및 지도·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명기하였 음.
- 충북의 경우, 지난 2021년 7월 ‘충북대학교병원’ 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로 지정돼, 2022년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 갔고, 올해 예산으로 5억 4,600 만 원(국비 50%, 도비 50%) 가량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 대상 각종 보건의료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 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7) 제13조(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

8) 제14조(장애인 건강권 교육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장애인의 진료·재활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
2.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
3. 여성장애인의 임신,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

9) 제15조(재활운동 및 체육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, 「체육시 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을 지정하여 장애인에게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.

10) 제16조(장애인 건강 주치의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 한 장애인(이하 “중증장애인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.

11) 제17조(의료비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


서비스 제공과 함께 공공보건 의료기관 및 병·의원, 시군보건소, 장애인시설 등 보건의료와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.

- 이렇게 장애인의료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의료인력 부족 상태, 파업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한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 중단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센터 지정 과정에서 운영 책임 소재, 해결방안 등에 대해 명확히 하고 지도·감독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을 근거로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인한 장애인구 증가 및 장애인의 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, 장애인에 대한 의료차별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수준 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- 이를 위해, 도지사의 책무, 도민의 의무,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수립,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 및 지원,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.
- 이에, 본 조례안은 그 목적과 추진 사업을 위한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,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안 입법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」

##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.
2. “건강권”이란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권을 말한다.
3. “장애인 건강보건관리”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말한다.
4. “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”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.

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, 장애 유형 및 정도, 모·부성권 보호,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

극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절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도지사는 장애인이 저소득, 낮은 교육수준, 의료 차별, 걱정하지 못한 고용·노동·주거 환경,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⑤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, 도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4조(도민의 의무) 도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)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‘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’과 연계하여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
2.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·훈련에 관한 사항
3. 장애 유형 및 정도,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
4.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 및 지원)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
2.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
3.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
4.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
5. 법 제14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 사업
6.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장애인복지시설,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
7.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
8. 법 제 17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
9.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사업 등의 위탁)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 필요한 경우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하는 법

인·단체·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장애인보건의료센터)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 보건의료센터(이하 “장애인보건의료센터”라 한다)를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,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
2. 도내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
3. 도내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·훈련
4.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
5.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9조(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) ① 도지사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
3.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지도·감독) ① 도지사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·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

### □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

( 약칭: 장애인건강권법 )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.
2. “건강권”이란 질병 예방, 치료 및 재활, 영양개선, 재활운동,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,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.
3. “장애인 건강보건관리”란 장애 유무, 장애 유형 및 정도,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.
4. “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”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, 주기별 질환관리, 진료 및 재활,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.
5. “재활의료”란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최소화 및 장애인(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포함한다)의 기능 회복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행위를 말한다.
6. “재활의료기관”이란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재활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.

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, 장애 유형 및 정도, 모·부성권 보장,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절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저소득, 낮은 교육수준, 의료 차별, 적정하지 못한 고용·노동·주거 환경,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)**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고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
2.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
3.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·훈련에 관한 사항
4. 장애 유형 및 정도,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
5.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

사항

③ (생략)

**제8조(장애인 건강관리사업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,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(이하 “장애인 건강관리사업” 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16조(장애인 건강 주치의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(이하 “중증장애인” 이라 한다)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20조(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)**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 라 한다)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(이하 “의료기관” 이라 한다)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·인력·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,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
2.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
3.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·훈련
4.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
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·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**제21조(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)** ①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,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(이하 “장애인보건의료센터” 라 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어느
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
3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**제25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)** 이 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□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( 약칭: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)

**제2조(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)**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연구·개발과 질 관리
2.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항목의 설계
3. 장애인의 「건강검진기본법」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
4.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

**제3조(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)**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
2. 건강관리, 영양관리, 운동지도 등 장애인 건강증진사업
3.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건강상담
4.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조사·연구
5.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·홍보

**제5조(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)**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(이하 “중증장애인”이라 한다)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.

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(主障礙) 관리
2.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만성질환 관리
3. 일상적인 질환의 예방 및 관리
4. 진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 기관 등과의 연계
5.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안내

#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도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재정지원사업
- 장애인(곰두리) 체육관 운영
- 장애인 의료비 지원
- 충청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

## 3. 관련조문

- 조례(안) 제6조(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 및 지원)
- 조례(안) 제8조(장애인보건의료센터)

## 4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장애인 건강검진사업
-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
-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
-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지원

### 나. 추계 결과

-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재정지원사업 : 83,750천원
- 장애인(곰두리) 체육관 운영 : 1,482,545천원
- 장애인 의료비 지원 : 892,131천원
- 충청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: 546,756천원

### 다. 재원조달방안

-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재정지원사업 : 국비50%, 도비50%

- 장애인(곰두리) 체육관 운영 : 도비 100%
- 장애인 의료비 지원 : 국비80%, 도비14%, 시·군비6%
- 충청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: 국비50%, 도비5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신영희

